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원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 2.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용기관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임용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고도의 책임성·보안성·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 3.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



차 등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 4.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및 기타 신원조사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 보의 수집ㆍ이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신원조사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바람.
- 5.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워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신원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관리·파기 절차 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유 ol

Ⅰ. 궈고의 배경

신원조사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가 신원조사 대상자 및 그 가족, 주변인물 등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신원조사를 관할하는 기관의 적절 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2. 14.「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에서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 조사대상자 한정, 조사항목



조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신원조사 대상 축소, 조사항목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은 2018. 12.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강석호 의원은 2018. 2. 9. 「신원조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신원조사 기본원칙, 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2018. 12. 현재 소관 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 이후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제도 운영 실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논의, 관련 입법 추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원조 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 (병합) 결정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신원조사 제도 개관

가. 신원조사 제도의 근거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다. 「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여권·선원수첩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훈령이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신원조사기관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신원조사기본법안」 주요 내용

「신원조사기본법안」제6조는 국가정보원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의 취급 또는 열람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안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안 제9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신원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신원조사 제도 시행 현황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 관련 통계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국 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내용 및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면 연간 약 100 만건의 신원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공무원 임용이 나 비밀취급 인가 등을 위한 신원조사는 약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여 권 발급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주요 외국의 신원조사 제도 운영 현황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법 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 신원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신원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인사 관련 기관,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방 관련 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신원조사의 대상에 따라 단순 신원조사와 보다 정밀한 신원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원조사 제도 관련 기본권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개인정 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

-5-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원조사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등을 포함하는바, 이들 정보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신원조사를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 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 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이른 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개인정보 파기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



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3. 신원조사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국가의 공적 직무를 담당하려는 자의 채용·승진 등에 있어 국가안보 등의 측면에서 결격사유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원조사 제도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신원조사 대상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와 중복되어 시행하는점 등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원조사 제도의 적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현재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소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가. 신원조사 제도의 법률적 근거 여부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며, 만약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모법(母法)에서 명시적·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12041 판결에서 신원조사 업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는 고유업무의 하나이며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보안업무 규정」은 모법의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정부 및 기업 등에 의한 정보 처리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늘어났으며,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행위를 이전에 비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원칙을 이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2. 14.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에서 신원조사제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러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정보원법」은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의 구체적・명시적 위임 없이 신원조사의 목적,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 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신원조사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신원조사 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단지 법률에 형식적 규정을 두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절차 등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근거 규정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대상 신원조사의 과잉금지 위배 여부

1) 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의 과잉 여부

「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은 신원조사 대상을 단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 훈령인「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6조에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소속기관 및 공무원 직군, 직급, 직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입법·행정·사법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할여지가 있다. 또한「공무원임용령」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외에도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 없이 임용 또는 신규 임용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임용의 개념까지 신원조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은 해당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임용 절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채용시험 합격 및 채용후보자 등록 등 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임용을 제한・거부할 수



없다. 즉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기관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임용 여부 판단에 활용하면 충분하고, 임용예정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결격사유 조회 절차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낮다.

따라서 공무원 신규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 조회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 조사를 별도·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 방법이 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따 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임용·임명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기밀 보호, 이른바 공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등 공직자 윤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한 결격사유 조회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는 임용예정기관이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통하여 임용 여부를 판단하고,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개인정보 파기 원칙 위배 여부

공무원의 신규 또는 승진 임용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권리능력, 자격요건, 범죄경력 등의 정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인적 신뢰성 확인을 위한 국적, 병역 등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가 정하는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활



동 내역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원진술서 등은 상기의 개인정보 항목 이외에 가족관계, 친교 인물, 재산, 취미·특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이들 정보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기타 공무원의 인적 신뢰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특히 건강정보의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에서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역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히 보호하는 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원조사에서 건강정보를 별도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엄격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항목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신원조사 회보가 종료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절차를 수립·공개하고, 신원조사 회보 이후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여권, 선원수첩, 사중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대상 신원조사의 과잉 금지 위배 여부

1) 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의 과잉 여부

「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 제3호는 해외여행을 위하여「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보안업무규정」제56조 제3항은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여권발급 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신원조사회보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원조사란 여권 발급 신청인에게 「여권법」제12조에 따른 거부·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권법」등이 정하는 거부·제한 사유는 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1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나, 이러한 신원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거부·제한 사유를확인하는 절차는 출입국 관리의 차원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면족하며 신원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 제3호는 '입국하는 교포'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하나, 출입국 관련 법률에서는 교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없다. 즉 법률적 개념조차 모호한 교포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문제일 뿐더러, 이 교포라는 개념이 설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를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는 신원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2)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개인정보 파기 원칙 위배 여부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거부·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여권법」 제12조의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출국의 금지 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격요건, 권리능력, 범죄경력 등의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신원진술서(약식) 등은 앞서 살펴본 공무원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개인정보 항목 이외에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도 록 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거 부·제한 사유 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 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 조 제1항이 정하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신원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절차에 대해서도, 앞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대상 신원조사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절차를 수립·공개하고,



신원조사 회보 이후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원조사 제도 소관 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1항은 신원조사의 주관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을 명시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가정보원이외에 국방부, 경찰에 의한 신원조사도 정하고는 있으나 같은 조제3항에서 경찰의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 제도의 총괄적 소관 기관임은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과거 신원조사 권한을 오남용하여 국내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시도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다른 국가행정기관과 달리 소관 업무에 대한 외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원조사 업무에 있어서도그 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 담당 기관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등 국가 사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소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원조사를 정보·보안 담당 기관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원조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과잉금지를 위한 제 도개선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신원조사 제도 소관 기관의 적정성에 대 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8. 12. 27.

위 원 장 위 위 정문가 정 문 자 위 원

위 정본입니다.

2019. 1. 31.

국 가 인 권 위 원



의사운영 담당 안 소 욱 (인)